

[공통서식 제1호]

■ 에너지법 시행규칙 [별지 제1호서식]

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[] 재신청서 []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3쪽 중 제1쪽)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기간	14일
신청인 □ 대상자 □	성명	주민등록번호		자택전화	
				휴대전화	
	주소				
	수급자 구분	[] 생계·의료급여 [] 의료급여 [] 생계·의료급여			
	대상가구	[] 노인(만 65세 이상) [] 장애인 [] 영유아(만 6세 미만) [] 임산부 []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			
가구원수	[] 1명 [] 2명 [] 3명 이상				
가족사항	신청인과의 관계	성명	주민등록번호	동거여부 (미동거사유)	전화번호 (집/직장/휴대폰 등)

주거형태	[] 다가구·다세대주택(1개의 주소에 2가구 이상 거주) [] 아파트·오피스텔(5층 이상, 관리소 존재) [] 연립주택·단독주택(1개의 주소에 1가구만 거주) [] 상업시설(상가·공장·바닐하우스 등) [] 숙박시설(여인숙 등)·다중생활시설(고시원 등) [] 종교·복지시설 등 그 밖의 주거형태	
하절기	[] 가상카드(요금차감) * 전 기 (고객번호: , 전기 회사명:) (동, 호)	
동절기 (이용권방식 택 1)	[] 실물카드	
	[] 가상카드 (요금차감)	[] 전 기 (고객번호: , 전기 회사명:) (동, 호) [] 도시가스 (납부자번호: , 도시가스 회사명:) (동, 호)
	* 에너지원(택 1)	[] 지역난방 (사용자코드: , 지역난방 회사명:) (동, 호)

「에너지법」 제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에너지이용권을 ([] 청, [] 신청)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대리인) 성명: (서명 또는 인)

신청인과의 관계: (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)

담당 공무원(직권신청시):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제2쪽 참조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	--------

신청인 제출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: 대리인 신분증 사본, 대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2. 가상카드 선택 시 추가 제출서류 (현 거주지에 해당하는 영수증 및 고지서에 한정합니다): 전기요금 영수증(고지서), 도시가스요금 영수증(고지서), 지역난방요금 영수증(아파트관리비고지서) * 아파트(공동주택) 거주자의 경우, 아파트관리비고지서를 지참해야 하며, 해당거주지의 관리사무소 확인을 통해 전기·도시가스·지역난방 고객센터(납부자번호 및 사용자카드 등)를 적어야 합니다. 3. 임산부인 경우: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관계 기관이 보유한 정보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4. 「에너지법 시행령」 제13조의2제1호나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: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(관계 기관이 보유한 정보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2. 주민등록표 등본 3. 장애인 증명서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(대리인):

(서명 또는 인)

관계기관 보유 개인정보 확인 동의서

이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「에너지법」 제16조의3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에너지이용권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, 소득·재산·근로능력·취업상태에 관한 정보,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,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·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, 금융·국세·지방세, 토지·건물·건강보험·국민연금·고용보험·산업재해보상보험·출입국·병무·보훈급여·교정·건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하고, 해당 정보를 5년간 보유(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)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본인(대리인 포함)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대리인):

(서명 또는 인)

신청인과의 관계:

(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)

안내 및 유의사항

■ 신청인(대리인) 및 직권신청인의 범위

본인, 가족, 친족(배우자, 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), 에너지이용권 담당공무원

■ 유의사항

1. 「에너지법」 제25조에 따라,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, 같은 법 제16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에너지이용권을 판매·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
2. 신청인(대상자)란에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에너지이용권을 수급받을 사람을 기입하여야 합니다.

* 신청인(대상자)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e음)에서 '대상자'로 지정되는 사람을 말합니다.

